

2024 현대건설 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부문별 편람)



[도입 배경 · 목적]

‘21.12.30. 附로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사업자간 가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경쟁사업자와 가격 등을 합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러한 정보를 주고 받기로 합의하거나 실제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도 담합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정위나 검찰의 조사를 통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는 과징금 부과, 입찰제한과 같은 행정제재와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불이익이 가능하며, 회사와 대표이사 또는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은 벌금형, 징역형 등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담합으로 인한 범위반 리스크가 매우 중대하므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율적으로 주의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해 전사 임직원 분들이 경쟁사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여 담합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임직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자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업무 편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및 개정]

본 문서는 컴플라이언스팀의 검토를 거쳐 작성 및 개정되며, 컴플라이언스팀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작성 및 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 06. 03. 최초 작성
2. 2023. 06. 26. 1차 개정
3. 2024. 12. 02. 2차 개정

Contents

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Part 01	정보교환 및 담합 관련 기본개념	
1.1	정보	3
1.2	교환	4
1.3	합의	5
1.4	입찰담합	6
Part 02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규제	7
	(개정 공정거래법)	
Part 03	담합에 대한 제재 및 영향	8
Part 04	경쟁사 모임 참석 시 유의사항	9
Part 05	정보교환 관련 문서작성 지침	10
5.1	사용금지 표현	
5.2	정당성 입증 근거자료의 확보	
Part 06	임직원 행동원칙	12
6.1	기본원칙	
6.2	행동원칙 : 유의사항 및 금지사항	
Part 07	기타 동향	15
7.1	최근 처분사례 및 시사점	

1.1 정보

✓ 영업활동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영상 정보

- 예시) 1. 입찰가격, 입찰조건, 투찰률, 낙찰자, 낙찰가격, 낙찰률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공종별 원가, 실행률
4. 특정 프로젝트 입찰계획, 공구 별 입찰계획 등

✓ 실질적 경쟁 제한성이 있는 모든 정보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경영상 정보 외에도 특정 정보를 통해 영업상 영향을 미치거나 입찰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 누구나 공공연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OK

불특정 다수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정보」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업 및 담당자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급 정보에 대한 판단근거가 부족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정책지원1팀 사전문의를 통해 해당 정보의 교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받기 바랍니다.

1.2 교환

✓ 정보교환의 수단, 방법 무관

우편,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 회의, SNS, 메신저 등

✓ 제3자를 통한 전달도 해당 가능

- 중간 매개자(협회 등)를 통한 정보의 상호 교환 역시 법 위반 성립 가능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 단,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는 것은 가능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공동행위 심사기준 및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교환」은 **회사가 경쟁사에 정보를 알리는 행위 및 경쟁사가 알리는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편,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 회의, SNS, 메신저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합니다.

또한,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협력업체,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1.3 합의

✓ 명시적 합의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문서화된 합의

✓ 묵시적 합의

직접적인 말이나 합의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통해 합의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도 포함

✓ 합의의 입증

< 직접증거 >

- 공동행위에 참여한 임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서, 확인서 등
- 모임 결과보고, 내부보고서, 메모, 이메일, 업무일지, 다이어리 등
- 합의서, 회의록, 이행각서, 협약서, 단가합의서, 합의내역 통보 공문, 합의 위반에 대한 제재 각서, 각서 파기 합의서, 컨소시엄 운영 규약

< 정황증거 >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의 증거 (ex. 문자 · 통화기록)
- 합의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정보교환 시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합의로 간주되어 실제 담합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발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정보 수신/교환 거부 의사 표명 뿐 아니라 경쟁사의 정보제공이 더 이상 없도록 하거나 실제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의만으로도 담합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위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입찰담합

✓ 입찰가격 담합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

✓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

✓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경영간섭 등

입찰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하며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

사 례 1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13개 건설사들이 '05~'06년(1차- 5건), '07년(2차-3건), '09년(3차 -4건) 등 3차례 총 12건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합의, '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가격 결정 후 입찰 참여

⇒ 공정위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사 례 2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22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6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 등을 합의

1) 1차 : 일괄발주 16건에 대해 낙찰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및 투찰률 합의 · 실행

2) 2차 : 입찰 12건에 대해 발주될 때마다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합의 · 실행

⇒ 공정위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Part 02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규제 (개정 공정거래법)

✓ 정보교환행위 합의규정 신설

개정 공정거래법(제40조 제1항 제9호)은 사업자 간에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정보교환은 더 이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아닌 그 자체로서 합의의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중략)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정보교환행위를 통한 합의의 추정 규정 신설

또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의 공동 인상 등 사업자 간에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동법 제40조 제5항 제2호). 이러한 추정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합의가 추정되므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Part 03 담합에 대한 제재 및 영향

과징금	<p>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배 증가
형사처벌	<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법 집행 증가 추세
부정당업자 제재	<p>조달청 등 관계기관 입찰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최대 2년)</p>
민사소송	<p>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p>
이사의 책임	<p>대표이사 및 이사의 개인책임(감시의무) 발생 ('22년 대법원 판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 책임 인정 · 4대강 담합에서 모든 이사(대표이사, 사내·사외이사) 책임 인정
글로벌 경쟁력 저하	<p>해외 수주 차질 (해외 발주처 컴플라이언스 이슈 강화)</p> <p>대외 신인도 하락 및 ESG 경영 타격</p>

Part 04 경쟁사 모임 참석 시 유의사항

✓ 모임 참여원칙

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계모임 참여는 절대 금지함**
※ 경쟁사와의 접촉은 가능한 피하며, 필요시 최소한의 접촉
2. 업계모임 참석 도중 담합금지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즉시 퇴장 및 컴플라이언스팀에 신고

「모임 참석 시 행동요령」

- 가격(입찰가격, 낙찰자 결정, 들러리 등),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담합은 합의 사항의 실행 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 불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범위반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정책지원1팀과 협의합니다.
-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가로 간주되므로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 거부의사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해당 모임 종료 후 즉시 컴플라이언스팀에 신고
- 업계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려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보고 기록 유지, 공유 가능한 내용은 컴플라이언스팀 및 정책지원1팀 해당 내용 공유

5.1 사용금지 표현

「 담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주의 」

- 경쟁사/동종사와 “협력” 강화
- 업계 간 Win-Win 체제 구축, “공조”, “협조” 체제 구축
- “입찰예상가 파악”
* 경쟁사로부터 가격정보를 수집하는 것 인지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음
- “경쟁사 협업으로 입찰 조건 변경”
* 경쟁사와 어떠한 협업이 존재하는 것인지 문제 제기 가능성 존재
- “형식적 입찰 참여”
* 들러리 담합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 존재
- 업계 공동 대응(예정), 업계 차원의 검토
- 타사와 정보 “공유”
- “A사 실행 투찰 결정“, “B사 2023.00.00.부터 00공사 불참 예정”
- “(출혈)경쟁 자제”, “(출혈)경쟁 지양”
- “공감대” 형성
- “시장 안정화” 협조, “시장 정화” 방안, “시장 질서“ 유지, 개선 필요
- “당사 구역”, “타사 구역”
- “본 문서는 읽은 후 폐기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타사와의 교류 내용
- (경쟁사와) ... 하기로 협의
- (경쟁사는) ... 한 것으로 탐문됨 * 탐문 근거 적시 필요
- (경쟁사는) ... 경 거래조건을 ... 로 변경 예정
- (경쟁사는) ... 에 대해 00 입장 표명
* 경쟁사와 의사결정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우려

5.2 정당성 입증 근거자료의 확보

「 당사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확보 」

- 문서 자체를 폐기/온닉하기보다는 당사의 의사결정이 담합의 결과가 아니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회사의 대응 방안을 결정한 경우, 정보의 출처와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고서 작성시 어떤 행위의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은 피해야 합니다.
- 문서관리규정 상의 보존 시한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전자우편(e-mail), 문서, 메모를 작성하거나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Part 06 임직원 행동원칙

6.1 기본원칙

당사 임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경쟁사와의 접촉 또는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의 작성 및 보관은 안되며, 부득이하게 경쟁사와의 접촉 또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적절한 사내 절차를 거쳐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시에 충분히 구비해야 합니다.

6.2 행동원칙

당사 임직원들은 부득이하게 경쟁사와의 접촉 또는 정보교환을 하게 될 경우에 앞서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01 유의사항

-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업무상 목적으로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문제가 될 경우 회사에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임직원 개인 역시 심각한 현실적·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 상급자/직책자의 지시가 경쟁사 정보에 관한 것일 경우, 내부 규정 및 사내 절차에 따라 상급자/직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문제를 상기시키고, 필요할 경우 지시자와 사전에 컴플라이언스팀 및 정책지원1팀과 논의하기 바랍니다.
- 경쟁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경우, 회의에 앞서 논의 안건을 요청하여 입수하고 해당 안건이 경쟁사와 논의하기에 적법한 주제일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 경쟁사와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또는 민감한 사항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e-mail) 등 기록이 남는 형태의 연락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 더욱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경쟁사와의 회의 시 공정거래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공사의 발주, 공사금액, 거래조건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명시적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즉시 자리를 떠나기 바랍니다.
 - ※ 부적절한 논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침묵한 경우에도 암묵적 동의로 평가될 수 있음
- 경쟁사로부터 논의가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문의가 올 경우, 답변 거절 바랍니다. 금지되는 사항인지 의문스러울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정책지원1팀과 논의하여 금지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의에 대해 대응 바랍니다.
- 적법한 방법으로 획득한 경쟁사 정보를 내부 보고 등에서 인용하는 경우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고 근거를 첨부하거나 정보의 획득 과정을 기록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적법한 정보습득 경로의 예시 : 공공문서/기록, 언론 보도자료, 마케팅·리서치회사의 자료, 발주처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쟁사 관련 정보
- 입찰가격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당사의 내부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내부적인 근거를 명확히 기록하여 해당 결정이 당사의 자체적인 검토와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더라도 회사/개인 문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은닉하지 말고 사전에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정책지원1팀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타인이 하고 있거나 예전부터 해 오던 관행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법 위반의 의심이 가는 행위를 사전 검토없이 진행하면 안됩니다. 적법한 행위인지 확실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정책지원1팀과의 논의 후에 진행하기 바랍니다.

02 금지사항

- “이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겠지.”, “회사를 위한 행위이니 문제 없겠지.”하는 생각으로 정보교환 또는 경쟁사와의 합의가 포함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경쟁사의 임직원인 경우 사업 활동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 등은 피해야 합니다.
- 경쟁사 임직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잦은 연락을 하는 행위는 피하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논의와 관련 정보 교환은 금지합니다.
▷ 입찰가격, 공사원가, 거래조건, 시장점유율, 연구 및 개발자료, 수주 전략, 홍보계획 등
- 내부 문서, 비공식 문서, 개인 일지 등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거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민감한 사항에 관한 논의, 정보교환,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인될 만한 표현은 장난스러운 표현이나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난스러운 표현이나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진술 또는 기재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사업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건설 관련 전문지 등 언론에 대하여 사전에 당사의 구체적인 수주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대략적인 공사 수주/수행 관련 동향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협력업체 등 경쟁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경쟁사의 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러한 정보 취득 경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7.1 최근 처분사례 및 시사점

「공정위/검찰은 건설 등 수급사업자 담합에 대해 높은 관심 가지는 중」

〈처분 사례〉

-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합 : 검찰의 고발 요청 → 공정위 처분 (추가조사 진행 중)
 - 내용 :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 10년간, 24개 건설사 발주, 738건(약 2조원) 입찰담합
 - 공정위 처분 (1월) : 과징금 총 931억 +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 고발
 - 형사 1심 (6/4) : 법인) 벌금 1~2억, 임직원 11명) 징역 10월~1년, 집행유예 2년
-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담합 제재
 - 내용 : 20개 사업자, 6년간, 77건의 입찰담합 / - 공정위 처분 (6월) : 과징금 12.14억
-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담합 제재
 - 내용 : 13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사업자, 9년간, 334건의 입찰담합
 - 공정위 처분 (5월) : 과징금 105억
- 최근 건설, 자동차 등 수급사업자 간 담합 외에 **원사업자의 묵인, 인지 여부** 등까지 조사 확대 분위기
- ‘주한미군 시설유지보수공사’ 담합 사례(‘24.2.7일 보도)에서는 **소수의 고정된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담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합의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수급사업자 입찰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동 사례에서 담합 가담자들도 공정위 과징금 (9.29억 원)보다 많은 310만 달러를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으로 지급함)

